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26. 10. 26.>

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개월

신청인 (운영주체)	신청단위	[] 지자체, [] 법인, [] 단체
	사업장명칭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성명	참여 농가 수
	주소 (위치 요약) (전화번호)	
	(지방자지단체 주관의 경우) 지방자치단체명 : 담당부서: 담당 / 직위: 성명: 전화번호:	
신청내용	신청구분 [] 최초 지정 신청, [] 재지정 신청	
	지정구분 [] 농산물 직매장 [] 농산물 직거래 장터 []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[]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	
	사업장 소재지	
	신청면적(㎡)	
	주요품목	

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**장**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 2.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생년월일: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심 사	→	지 정	→	지정서 발급
신청인		농림축산식품부		농림축산식품부		농림축산식품부		농림축산식품부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